

노인의 경제생활 여건과 정책 방향



The Economic Conditions of Older Adult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황남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고에서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노인의 소득과 소비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본 후,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최근 6년간의 경제생활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 총소득은 약 428만 원 증가(2162만 원 → 2590만 원)하였으며 노인의 개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도 2.2%포인트 증가(53.3% → 55.5%)하였다. 이러한 가구 내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 증가는 근로소득 확대(37.9% → 47.3%)에 따른 것이며, 노후소득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이전소득은 노인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작은 편이며 변화 속도가 느린 것으로 확인되었다(25.2% → 27.4%).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지원 정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노인의 소득과 소비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본 후, 2011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

여 최근 6년간의 경제생활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며, 노인의 생활 실태와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¹⁾ 그러나 노인의 경제

1) 「노인복지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법률 제15442호, 공포일 2018. 3. 13., 시행일 2018. 6. 14., 일부개정).

생활상 관련 조사 문항은 2008년 최초 조사 이후 2011년부터 크게 변경되어, 연속 선상에서의 시계열적인 비교 분석은 2011년부터 가능하다.

한편 소득과 소비지출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있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과 가구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노인의 경제 상태를 살펴볼 것이다. 가구에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원리가 적용되어 가구 규모가 증가할수록 1인당 생활비는 절감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구 규모별(가구 단위)로 기준중위소득을 달리 적용²⁾하는 이유, 기초연금제도가 부부 감액³⁾을 적용하는 이유도 바로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가구 소득에서 노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소득의 절대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가구 내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도 파악하고자 한다.

소비지출과 관련해서는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수준과 함께 노인가구의 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 그리고 노인을 위한 지출 규모를 추가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자산과 부채 보유 규모를 분석한다.

2. 노인가구의 소득

가. 가구 총소득 및 소득 구성 항목

조사 대상 가구의 작년 한 해⁴⁾ 연 가구 총소득은 2589만 7000원이며, 소득 항목별 구성 비율은 근로소득이 47.3%(1224만 5000원)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 27.4%(710만 4000원), 사적이전소득 15.2%(392만 4000원), 재산소득 9.2%(239만 5000원) 등의 순이다.

응답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⁵⁾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연 총소득이 2759만 2000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2219만 원보다 더 많고, 동부의 경우 재산소득 비율이 11.1%로 읍·면부의 4.3%보다 6.8%포인트 높은 특성이 있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2817만 3000원)이 여자 노인(2421만 5000원)보다 가구 총소득이 395만 8000원 더 많은데, 소득 항목 구성에서 남자 노인은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각각 10.2%, 28.2%)이 여자 노인(각각 8.5%, 26.8%)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 여자 노인은 소득 구성 항목에서 사적이전소득이 16.9%로 남자 노인의 13.1%보다 3.8%포인트 높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5185호, 공포일 2017. 12. 12., 시행일 2018. 3. 13., 일부개정).

3)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기초연금법 법률 제15536호, 공포일 2018. 3. 27., 시행일 2018. 9. 1., 일부개정).

4)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다(이하 동일).

5) 이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응답 노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연령별 가구 총소득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낮지만 85세 이상인 경우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소득 구성 항목 중 근로소득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지만 85세 이상에서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85세 이

상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 형태별 가구 총소득은 노인독거가구가 1172만 3000원으로 가장 적고, 그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 연 2342만 7000원, 기타가구 연

표 1. 2017년 가구 총소득 규모

(단위: 만 원, 명)

특성		연 총소득	연 총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전체		2,589.7 (100.0)	1,224.5 (47.3)	239.5 (9.2)	392.4 (15.2)	710.4 (27.4)	22.6 (0.9)
지역	동부	2,759.2 (100.0)	1,291.3 (46.8)	305.6 (11.1)	390.5 (14.2)	744.9 (27.0)	26.5 (1.0)
	읍·면부	2,219.0 (100.0)	1,078.4 (48.6)	95.2 (4.3)	396.4 (17.9)	635.0 (28.6)	14.1 (0.6)
성	남자	2,817.3 (100.0)	1,343.9 (47.7)	286.3 (10.2)	369.6 (13.1)	793.3 (28.2)	24.2 (0.9)
	여자	2,421.5 (100.0)	1,136.3 (46.9)	204.9 (8.5)	409.2 (16.9)	649.2 (26.8)	21.4 (0.9)
연령	65~69세	3,055.3 (100.0)	1,673.4 (54.8)	234.7 (7.7)	306.1 (10.0)	814.5 (26.7)	26.7 (0.9)
	70~74세	2,502.6 (100.0)	1,091.6 (43.6)	266.2 (10.6)	375.1 (15.0)	746.8 (29.8)	21.6 (0.9)
	75~79세	2,324.8 (100.0)	977.4 (42.0)	248.4 (10.7)	473.1 (20.4)	605.5 (26.0)	20.3 (0.9)
	80~84세	2,050.2 (100.0)	785.5 (38.3)	189.1 (9.2)	481.6 (23.5)	569.2 (27.8)	24.7 (1.2)
	85세 이상	2,565.5 (100.0)	1,198.3 (46.7)	235.4 (9.2)	432.2 (16.8)	686.8 (26.8)	12.7 (0.5)
가구 형태	노인독거	1,172.3 (100.0)	176.4 (15.0)	110.8 (9.5)	402.5 (34.3)	467.2 (39.9)	14.9 (1.3)
	노인부부	2,342.7 (100.0)	723.1 (30.9)	307.9 (13.1)	432.9 (18.5)	852.6 (36.4)	26.2 (1.1)
	자녀동거	4,396.9 (100.0)	3,201.9 (72.8)	248.8 (5.7)	281.9 (6.4)	637.9 (14.5)	26.3 (0.6)
	기타	3,147.9 (100.0)	1,686.6 (53.6)	125.1 (4.0)	489.7 (15.6)	841.8 (26.7)	4.6 (0.1)

주: 1) 전체 응답자 1만 29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재산소득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작년 한 해(2016. 1. 1.~2016. 12. 31.) 기준이며, 근로소득에는 사업소득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3147만 9000원, 자녀동거가구 연 4396만 9000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구성 항목에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사적이전소득(34.3%)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노인부부가구는 재산소득(13.1%), 자녀동거가구는 근로소득(72.8%)의 비율이 높은 특성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소득취약성이 가장 높은 노인 집단은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자, 후기노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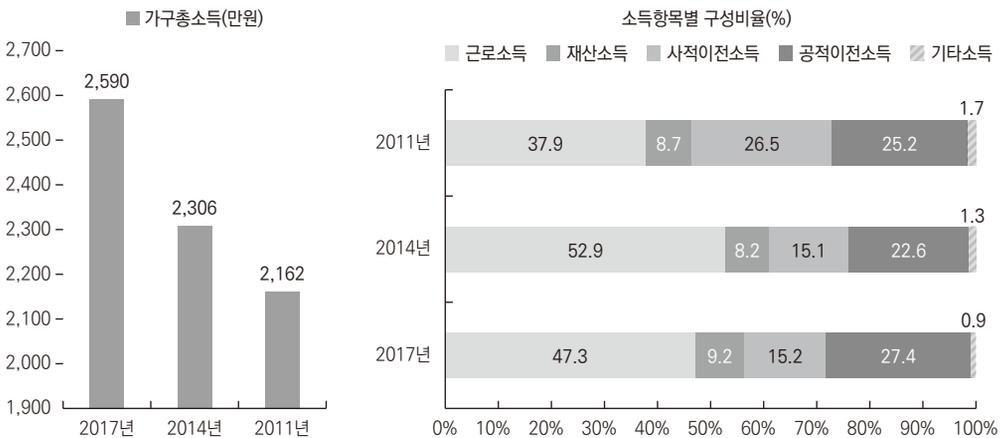
한편 가구 총소득은 2011년 2162만 원에서 2014년 2306만 원, 2017년 259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⁶⁾ 항목별 구성 비율에서 근로소득의 증가와 사적이전소득의 감소가 두드러진 특성

으로 확인된다. 근로소득은 2011년 37.9%에서 2014년 52.9%로 15%포인트 증가한 후, 2017년 47.3%가 되었다. 사적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26.5%에서 15.1%, 15.2%로 감소하였다. 즉 2011년과 비교하여 2017년 근로소득은 9.4%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사적이전소득은 11.3%포인트 감소하였다.

나. 가구 총소득 중 노인 소득 비율

가구 내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 총소득에서 노인의 개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가구 소득의 80%~100% 미만인 경우가 34.0%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가

그림 1. 가구 총소득과 항목별 구성 비율 추이: 2011~2017년



6)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 소득 20% 미만인 경우로 22.4%이다. 가구 소득에서 노인의 개인 소득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55.5%이다. 지역별 평균 비율은 읍·면부 노인(58.7%)이 동부 노인(54.1%)보다 높고, 성별로는 남자 노인(64.2%)이 여자 노인(49.1%)보다 높다. 읍·면부 거주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비록 가구 총소득은 적지만 가구 내에서의 경제적 독립성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65~69세의 경우 가구 총소득에서 노인의 개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2.5%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80~84세는 59.8%이며, 85세 이상

은 56.0%로 낮은 역U자형 관계를 보인다.

가구 형태별로 살펴보면, 가구 소득에서 노인의 개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노인독거가구가 평균 91.2%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는 27.7%로 가장 낮다. 노인독거가구의 83.3%는 본인의 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 미만을 차지하며, 가구소득의 40%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도 4.7%이다. 노인독거가구에서 노인 개인의 소득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가 아닌 것은, 가구 형태의 조사 시점(2017년)과 소득 산출의 기준 시점(2016년)이 다르기 때

표 2. 2017년 가구 소득 중 노인의 개인 소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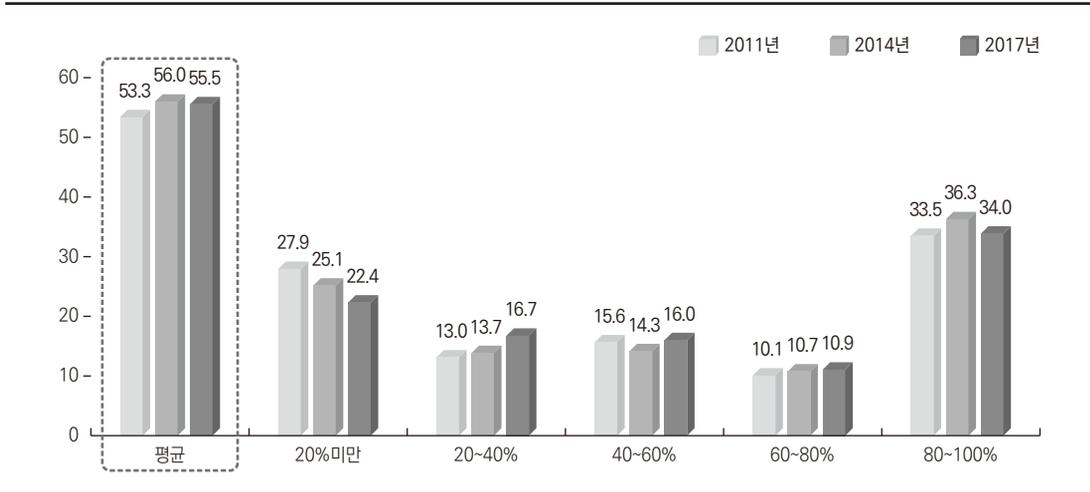
(단위: %, 명)

특성	계 (대상자 수)	가구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소득	평균 비율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00% 미만		
전체	100.0 (10,299)	22.4	16.7	16.0	10.9	34.0	55.5	
지역	동부	100.0 (7,067)	24.4	16.8	15.7	9.8	33.3	54.1
	읍·면부	100.0 (3,232)	17.9	16.6	16.8	13.2	35.5	58.7
성	남자	100.0 (4,375)	10.2	13.3	19.2	18.9	38.4	64.2
	여자	100.0 (5,924)	31.4	19.2	13.8	4.9	30.7	49.1
연령	65~69세	100.0 (3,332)	26.2	17.5	14.4	9.2	32.7	52.5
	70~74세	100.0 (2,560)	21.9	17.3	15.2	12.1	33.5	55.5
	75~79세	100.0 (2,176)	18.2	16.9	18.8	12.2	33.9	57.5
	80~84세	100.0 (1,356)	18.3	13.9	19.5	11.9	36.4	59.8
	85세 이상	100.0 (875)	26.0	15.6	12.8	8.8	36.8	56.0
가구 형태	노인독거	100.0 (2,426)	0.9	3.8	8.0	4.0	83.3	91.2
	노인부부	100.0 (4,980)	18.1	18.0	21.8	17.1	25.0	52.9
	자녀동거	100.0 (2,444)	51.4	25.1	12.3	4.8	6.4	27.7
	기타	100.0 (449)	27.6	26.2	16.2	12.3	17.7	43.4

주: 1) 전체 응답자 1만 29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재산소득의 경우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2) 소득은 작년 한 해(2016), 가구 형태는 조사 연도(2017) 기준이므로 노인독거가구의 노인 개인 소득 비율이 100%가 아님.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그림 2. 가구 소득 중 노인의 개인 소득 비율 추이: 2011~2017년

(단위: %)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거가구는 노인 스스로 소득을 충당하고, 자녀동거가구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⁷⁾ 그러나 독거가구가 자녀 등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독거가구는 가구 총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4.3%로 다른 형태의 가구에 비해(노인부부 18.5%, 자녀동거 6.4%, 기타 15.6%) 높은 편인데, 사적이전소득은 자녀에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구 소득 중 노인의 개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53.3%에서 2014년 56.0%,

2017년 55.5%로 증가 추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구 소득의 20% 미만인 경우가 2011년 27.9%에서 2017년 22.4%로 5.5%포인트 낮아졌고, 가구 소득의 20%~40% 미만인 경우가 같은 기간 13%(2011년)에서 16.7%(2017년)로 3.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에 가구 소득의 40%~60% 미만인 경우는 2011년 15.6%에서 2014년 14.3%로 감소한 후에 2017년 16.0%로 증가하였다. 가구 소득의 80%~100% 미만인 경우는 2011년 33.5%에서 2014년 36.3%로 증가한 후 2017년에 34.0%로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앞에서 가구 형태별 소득 구성 항목을 살펴볼 때, 자녀동거가구는 가구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72.8%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자녀동거가구는 자녀의 근로소득이 가구 총소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3.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가. 가구 소비지출액 및 부담 되는 지출 항목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62만 2000 원이며,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172만 1000원)이 읍·면부 노인(140만 8000원)보다 약 31만 원 더 지출한다. 즉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가구 총소득도 많지만(월평균 45만 원) 소비지출 또한 더 많다. 가구 총소득이 많은 노인이 가구 소비지출액이 더 큰 경향은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도 확인된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173만 6000원)이 여자 노인(153만 8000원)보다 약 20만 원 더 많이 지출 하며, 연령별로는 65~69세의 소비지출이 183만 8000원으로 가장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 하여 80~84세는 134만 8000원이다. 그러나 85 세 이상은 160만 8000원으로 80~84세보다 26 만 원 더 많은 U자형의 지출 구조를 보인다.

가구 형태별로는 가구 규모가 가장 작은 노인 독거가구가 83만 원으로 가구 소비지출이 가장 적고, 그다음이 노인부부가구 151만 4000원, 기

표 3. 2017년 가구 소비지출 및 가장 부담되는 가구 소비지출 항목

(단위: 만 원, %, 명)

특성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계 (대상자 수)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							
			식비	월세	주거 관련비	보건 의료비	경조사비	기타	없음	
전체	162.2	100.0 (10,299)	18.7	5.5	24.9	23.1	4.4	14.3	9.3	
지역	동부	172.1	100.0 (7,067)	21.0	6.5	23.8	21.1	4.0	14.5	9.1
	읍·면부	140.8	100.0 (3,232)	13.8	3.2	27.1	27.3	5.3	13.6	9.7
성	남자	173.6	100.0 (4,375)	19.2	5.1	23.0	22.2	5.8	14.8	9.9
	여자	153.8	100.0 (5,924)	18.3	5.7	26.2	23.7	3.4	13.9	8.9
연령	65~69세	183.8	100.0 (3,332)	19.1	6.0	22.7	17.2	7.0	17.8	10.2
	70~74세	159.4	100.0 (2,560)	19.6	4.4	26.1	22.3	5.0	13.0	9.5
	75~79세	150.3	100.0 (2,176)	17.3	5.2	26.6	28.3	2.2	12.2	8.3
	80~84세	134.8	100.0 (1,356)	17.9	5.9	24.8	30.5	1.9	10.1	9.0
	85세 이상	160.8	100.0 (875)	19.8	6.1	25.4	23.0	1.8	16.1	7.9
가구 형태	노인독거	83.0	100.0 (2,426)	16.4	29.3	23.0	1.4	1.9	17.3	10.7
	노인부부	151.4	100.0 (4,980)	17.0	3.4	24.8	27.2	6.1	11.9	9.6
	자녀동거	257.0	100.0 (2,444)	24.3	4.6	21.0	14.7	3.4	23.9	8.2
	기타	195.3	100.0 (449)	20.3	5.8	22.9	23.0	3.7	19.8	4.6

주: 1) 전체 응답자 1만 29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원이 응답한 결과임.

2) 작년 한 해(2016. 1. 1.~2016. 12. 31.) 기준이며, 기타에는 교육비, 간병·수발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통신비, 부채 상환 등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타가구 195만 3000원, 자녀동거가구 257만 원 순이다.

가구 소비지출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노인의 24.9%가 주택관리비, 냉난방비, 수도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 관련비라고 응답했으며, 여기에 월세 5.5%를 더하면 전체 노인가구 응답자의 30.4%가 주거와 관련된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노인가구는 보건의료비 23.1%, 식비 18.7%, 경조사비 4.4% 순으로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비(7.2%포인트)와 월세(3.3%포인트)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는 반면, 읍·면부 노인은 보건의료비(6.2%포인트)와 주거 관련비(3.3%포인트)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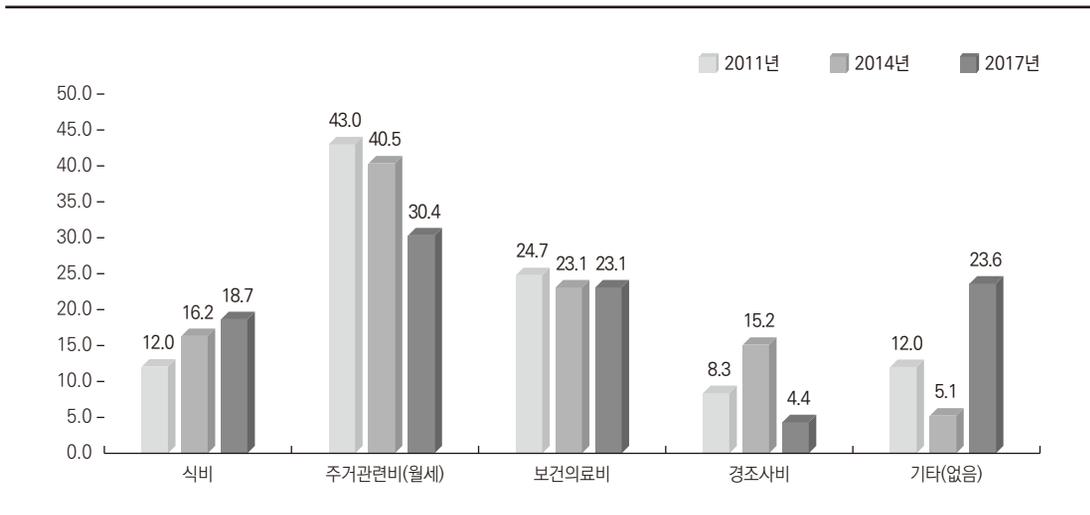
면부 지역은 동부 지역에 비해 주택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동부 지역은 읍·면부 지역에 비해 텃밭 가꾸기나 농사 짓기 등의 식재료 자가 생산 관련 활동이 어렵거나 매우 제한적이어서 식비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주거 관련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며(3.2%포인트), 연령대별로는 65~69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조사비(7.0%), 80~84세의 경우 보건의료비(30.5%)에 대한 부담을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월세에 대한 부담이 높으며(29.3%), 노인부부가구는 보건의료비(27.2%), 경조사비(6.1%)에 대한 부담이 상

그림 3. 가장 부담되는 가구 소비지출 항목 비교: 2011~2017년

(단위: %)



대적으로 높다. 자녀동거가구는 식비(24.3%)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2011~2017년 기간 동안의 가구 소비지출 중 노인가구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항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2011년은 월세를 포함한 주거 관련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43%였으나 2014년 40.5%, 2017년 30.4%로 응답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6년간 12.6%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에 식비라는 응답 비율은 2011년 12.0%에서 2014년 16.2%, 2017년 18.7%로 최근 6년간 6.7%포인트 증가하였다.

나. 노인을 위한 지출⁸⁾

노인 자신을 위한 지출 항목을 보건의료비, 간병·수발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비동거 가구원이 노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보건의료비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지출하는 서비스비와 의료비, 약제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건강보험료는 제외된다. 간병·수발비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개인 간병비 또는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한 비용, 기저귀 등 간병·수발과 관련된 용품의 비용이다. 문화여가비는 여행, 배우기(평생교육), 운동 등의 여가·문화활동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한 비용이며, 경조사비는 축의나 조의 등 다른 가구의 애경사에 지출한 비용이다.

노인 자신을 위한 지출이 있었는지를 항목별

로 살펴보면, 보건의료비 93.6%, 간병·수발비 5.2%, 문화여가비 73.7%, 경조사비 61.6%로 나타났다. 지출이 있었던 노인으로 한정할 경우 월평균 지출액은 보건의료비 9만 3000원, 간병·수발비 17만 7000원, 문화여가비 9만 3000원, 경조사비 4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 노인의 문화여가비 지출 비율과 지출액(74.5%, 10만 1000원)이 읍·면부 노인(71.8%, 7만 5000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 지출이 더 많았다(문화여가비: 남자 76.7%, 12만 원 / 여자 71.4%, 7만 1000원, 경조사비: 남자 74.7%, 6만 원 / 여자 52.0%, 3만 7000원).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에 대한 지출 비율과 월평균 지출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경조사비는 65~69세가 77.2%(5만 8000원), 85세 이상이 28.6%(3만 3000원)이다.

가구 형태별로는 기타가구의 간병·수발비가 타 가구보다 지출 비율과 지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0%, 38만 4000원).

8) 2011년에는 노인을 위한 지출 문항이 조사되지 않았다.

표 4. 2017년 노인을 위한 지출 발생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단위: 명, %, 만 원)

특성	(대상 수)	지출 유무				지출 노인의 월평균 지출액				
		보건 의료비	간병·수발비	문화 여가비	경조사 비	보건 의료비	간병·수발비	문화 여가비	경조사 비	
전체	(10,299)	93.6	5.2	73.7	61.6	9.3	17.7	9.3	4.9	
지역	동부	(7,067)	93.0	5.2	74.5	61.2	9.3	18.1	10.1	4.8
	읍·면부	(3,232)	95.0	5.3	71.8	62.5	9.1	16.7	7.5	5.0
성	남자	(4,375)	91.8	3.3	76.7	74.7	8.9	17.6	12.0	6.0
	여자	(5,924)	95.0	6.7	71.4	52.0	9.5	17.7	7.1	3.7
연령	65~69세	(3,332)	91.9	1.6	83.5	77.2	8.7	9.4	11.6	5.8
	70~74세	(2,560)	93.9	3.2	77.2	66.7	9.4	14.9	9.5	4.9
	75~79세	(2,176)	94.6	5.3	71.1	56.8	10.2	14.0	7.8	3.9
	80~84세	(1,356)	95.6	9.4	62.9	42.8	9.2	21.0	5.9	3.5
	85세 이상	(875)	93.9	18.6	48.6	28.6	8.7	21.7	5.5	3.3
가구 형태	노인독거	(2,426)	92.8	6.0	68.9	53.6	9.4	15.5	7.2	3.8
	노인부부	(4,980)	94.2	3.7	78.0	67.8	9.2	13.4	10.3	5.1
	자녀동거	(2,444)	93.7	6.0	71.2	58.4	8.8	16.3	8.9	4.8
	기타	(449)	91.2	14.0	64.8	54.4	11.9	38.4	9.8	7.7

주: 1) 전체 응답자 1만 29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월평균 지출액은 항목별로 지출이 있었던 노인을 대상(보건의료비 9691명, 간병·수발비 539명, 문화여가비 7482명, 경조사비 6185명)으로 한 평균 지출액임.

2) 작년 한 해(2016. 1. 1.~2016. 12. 31.)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4. 노인가구의 자산 및 부채⁹⁾

노인가구의 9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동산 자산을 살펴보면, 노인가구의 91.3%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규모는 2억 4546만 2000원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

(92.4%)이 읍·면부 노인(88.9%)보다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고, 보유 부동산의 가격도 동부 노인(2억 6496만 2000원)이 읍·면부 노인(2억 279만 7000원)보다 다소 높다. 앞에서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월세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보다 부동산 보유 비율이 3.5%포인트 높고 부동산

9) 2011년에는 노인 개인과 노인 부부의 자산 및 부채가 조사되었으며, 노인가구 전체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문항은 조사되지 않았다. 자산은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기타 자산은 보유 비율(44.6%)과 보유 금액(855만 3000원)이 적어 본고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가격도 6216만 5000원 더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93.8%)이 여자 노인(89.5%)보다 부동산 자산 보유 비율이 높으며, 부동산 가격 또한 남자 노인(2억 7891만 8000원)이 여자 노인(2억 2074만 7000원)보다 높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보유 비율이 낮아서 65~69세 95.3%, 75~79세 90.4%, 85세 이상 80.2%이며, 보유 부동산의 가격 또한 각각 2억 6465만 원, 2억 4532만 9000원, 2억 1005만 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유 부동산 금액이 낮은 경향이 있다.

가구 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부동산 보유 비율과 가치(96.0%, 2억 9432만 5000원)가 가장 높고, 노인독거가구(80.7%, 1억 1763만 7000원)가 가장 낮은 특성이 있다.

노인의 91.6%는 금융 자산이 있으며, 금융 자산의 평균 금액은 3631만 8000원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90.8%, 4104만 8000원)이 읍·면부 노인(93.1%, 2598만 원)보다 금융 자산 보유 비율은 낮지만 보유 금액은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금융 자산 보유 비율이 92.6%로 여자 노인의 90.8%보다 높고, 금융 자산 규모 또한 남자 노인(4195만 1000원)이 여자 노인(3215만 5000원)보다 크다.

금융 자산 보유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65~69세가 4030만 5000원으로 가장 많고, 80~84세가 2904만 6000원으로 가장 적다.

가구 형태별 금융 자산 보유 비율은 노인부부가구가 93.4%로 가장 높고 보유 금액도 4271만

9000원으로 가장 많다. 노인독거가구는 보유율이 87.3%로 가장 낮고 보유 금액 또한 2012만 1000원으로 가장 적다.

한편 노인 10가구 중 3가구(29.0%)는 부채가 있으며, 부채 규모는 2408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부채 보유 비율과 금액(32.4%, 2803만 7000원)이 읍·면부 노인(21.6%, 1544만 3000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부채 보유 비율과 금액(31.7%, 2726만 4000원)이 여자 노인(27.1%, 2173만 6000원)보다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비율이 낮고, 부채 수준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의 부채 금액이 2988만 2000원으로 가장 많고, 75~79세가 2108만 4000원이다. 그러나 85세 이상은 부채 수준이 증가하여 2234만 9000원이다.

가구 형태별 부채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부채 비율과 금액(17.0%, 1062만 9000원)이 가장 낮으며, 자녀동거가구(39.4%, 3625만 8000원)가 가장 높다.

표 5. 2017년 자산 및 부채의 보유 비율과 금액

(단위: %, 명, 만 원)

특성		계 (대상 수)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보유 비율	금액	보유 비율	금액	보유 비율	금액
전체		100.0 (10,299)	91.3	24,546.2	91.6	3,631.8	29.0	2,408.4
지역	동부	100.0 (7,067)	92.4	26,496.2	90.8	4,104.8	32.4	2,803.7
	읍·면부	100.0 (3,232)	88.9	20,279.7	93.1	2,598.0	21.6	1,544.3
성	남자	100.0 (4,375)	93.8	27,891.8	92.6	4,195.1	31.7	2,726.4
	여자	100.0 (5,924)	89.5	22,074.7	90.8	3,215.5	27.1	2,173.6
연령	65~69세	100.0 (3,332)	95.3	26,465.0	93.0	4,030.5	35.0	2,988.2
	70~74세	100.0 (2,560)	94.1	26,290.9	91.9	4,025.3	31.4	2,525.7
	75~79세	100.0 (2,176)	90.4	24,532.9	90.6	3,257.1	26.7	2,108.4
	80~84세	100.0 (1,356)	84.6	18,839.9	91.2	2,904.6	19.5	1,356.4
	85세 이상	100.0 (875)	80.2	21,005.0	88.1	3,021.2	20.1	2,234.9
가구 형태	노인독거	100.0 (2,426)	80.7	11,763.7	87.3	2,012.1	17.0	1,062.9
	노인부부	100.0 (4,980)	94.1	28,570.5	93.4	4,271.9	29.8	2,439.0
	자녀동거	100.0 (2,444)	96.0	29,432.5	92.2	4,114.1	39.4	3,625.8
	기타	100.0 (449)	92.1	22,398.5	90.2	2,654.2	29.3	2,704.6

주: 전체 응답자 1만 29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항목별 무응답(부동산 규모 1명, 금융 자산 규모 4명, 부채 규모 2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5. 나가며

2011~2017년 기간 동안의 노인 경제생활 여건을 살펴본 결과, 가구 총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 내에서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이 증가하였다. 가구 총소득은 2011년 2162만 원에서 2017년 259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구 총소득에서 노인의 개인 소득이 차지

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53.3%에서 55.5%가 되었다. 가구 내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 증가는 가구 소득 항목 중에서 근로소득의 확대(37.9% → 47.3%)에 의한 것이다. 노후소득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이전소득은 노인 가구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작은 편이며 변화 속도가 느린 것으로 확인되었다(2011년 25.2%, 2017년 27.4%).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 증가는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 다른 대안이 없어 마지못해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생계비를 마련하지만 가구 소득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노동시장 실질은퇴연령은 약 72세이며, 노인빈곤율이 45.7%(2015년, 상대빈곤율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3배라는 점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즉 공적연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지원 정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가구의 부동산 보유 비율은 91.3%로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주택연금제도를 통한 자산의 유동화 또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으로 올수록 월세를 포함한 주거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크게 낮아진 반면 식비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 10명 중 2명이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소비 항목인 식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노인가구의 식비 부담에 대한 더욱 세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으로 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읍·면부 지역 거주, 여자 노인, 고연령, 노인독거가구인 경우 경제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계에 부담이 되는 가구 소비지출 측면에서 본다면 읍·면부 노인은 보건의료비와 주거 관련비, 여자 노인은 주거 관련비, 고연령

(80~84세)은 보건의료비, 노인독거가구는 월세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소득 취약 노인집단별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생활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5185호 (2018).
 기초연금법, 법률 제15536호 (2018).
 노인복지법, 법률 제15442호 (2018).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이금룡(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김소영.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